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4. 5 선고 2019가단2257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석지혜, 이양래, 최병일, 허상수, 최창용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성, 문병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상화, 최문기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락훈

변론 종결2022. 2. 15.

판결 선고2022. 4. 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00분의 99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9. 3.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D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3. 19. 접수 제1636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D 사이에 2019. 4.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D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4. 9. 접수 제2122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 주문 제1, 2항, 또는

○ 피고 B과 D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B은 D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과 D 사이에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은 D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촉탁에 따라 2017. 6. 23.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202호로, '원고가 D에게 같은 날 125,000,000원을 변제기 2019. 6. 23.,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D이 위 차용금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 10000분의 999 지분에 관하여 2019. 3. 18.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 113,886,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9. 피고 B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 100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4. 9. 피고 C와 사이에 매매대금 114,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위 (1)항의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위 (1)항의 지분이전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D은 2019. 9. 16.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45940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이하 위 신청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는 D에게 125,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65,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6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데,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들에게 처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 및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말소 청구 D은 원고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은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D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으므로 무자력이 아니었다.

(3) D은 피고 B으로부터 2018. 3. 16. 51,000,000원을, 2018. 3. 15. 7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 B은 D에 대하여 합계 121,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합계 114,000,000원의 매매대금은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D과 가장매매를 한 것이 아니며 피고들에게는 사해의사도 없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금전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의 무자력

(1) D의 적극재산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D이 F의 주식 214,216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주식의 가액에 대해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주식의 가액을 107,108,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이는 위 주식의 액면가(1주당 5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 점($214,216\text{주} \times 500\text{원} = 107,108,000\text{원}$),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가장 인접한 시기인 2019. 4. 2. 위 주식이 1주당 500원에 거래된 사실(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2019년 주식거래내역 중 2019. 4. 2.자 양수도 부분)이 인정되는바 이 무렵 위 주식의 가액은 1주당 500원으로 계산한 107,108,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F이 2019. 9.경 합병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1주당 1,513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위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가격을 시가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H 영업 관련 채권

피고들은 D이 H 영업 관련 채권으로 총 267,237,103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9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H 영업 관련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 채권들의 채권자는 I으로 되어 있고, D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채권들을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채권이 실제로 D의 채권이라거나 회수가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채권들을 D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과 함께 1,14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10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D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합계 114,000,000원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이루어진 실거래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114,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5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위 담보에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인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담보가치만큼을 공제한 나머지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제 가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64,000,000원[=114,000,000원-50,000,000원(=500,000,000원×1/10)]이다.

(라) 그 밖에 아래 순번 1, 4, 5번 기재 적극재산과 그 가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D의 적극재산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	보험 해약환급금	J보험	24,279,195
2	비상장주식	주F	107,108,000
3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64,000,000
4	부동산	부산 부산진구 K건물 L호	598,000,000
5	대여금 채권	M	60,000,000
합계	853,387,195		

(2) D의 소극재산 (가) 피고 B에 대한 채무

갑 제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피고 B으로부터 5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나) IBK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고는 D이 위 은행에 대하여 5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D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 B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미 공제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주식회사 N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원고는 D이 주식회사 N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아래 순번 2 내지 16번 기재 각 채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2,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D의 소극재산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	대여금	B	515,000,000
2	대여금	O	100,000,000
3	대여금	원고	60,000,000
4	대여금	P	17,500,000
5	대여금	Q	20,000,000
6	대여금	R	40,000,000
7	대여금	S	4,221,700
8	손해배상	T	33,000,000
9	대출금(근저당권 피담보채무)	U은행	63,427,352
10	대출금(근저당권 피담보채무)	V은행	292,816,675
11	전세금	W	50,000,000
12	카드대금	X카드	10,994,707
13	대출금, 카드대금	U은행	24,670,1991) 대출금 20,730,650원+카드대금 3,939,549원
14	카드대금	Y카드	23,718,089
15	물품대금	주Z	20,730,650

1	대여금	B	515,000,000
16	물품대금	(주)AA	23,000,000
합계	1,299,079,372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은 853,387,195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1,299,079,372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처분의 동기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무렵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행위는 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D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D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회경

별지

1) 대출금 20,730,650원+카드대금 3,939,549원